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7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3
2.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마련(정태호의원안) ..	6
3. 세무사 보수기준 마련(정태호의원안)	12
4. 세무법인의 인적요건 완화(정태호의원안, 임광현의원안)	15
5. 징계 종류 세분화 및 세무사 징계 권한의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정태호의원안)	19
6. 세무의 날 신설(정태호의원안)	24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7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4. 10. 18.

(3) 회 부 일 : 2024. 10. 21.

나.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제7조의2)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00),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1)

☐ 개정안은 세무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세무사법」¹⁾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1)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여야 하고, 추후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이러한 세무사의 등록, 등록취소 업무는 법 제20조의3²⁾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사항은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왔음.

그런데, 경찰청은 세무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조회가 곤란하다는 입장임³⁾.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⁴⁾에서 범죄경력조회는

소한다.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세무사법」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경찰청은 2020년 8월 세무사회에 대하여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목적상의 지도점검 등을 위하여 전체 세무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회보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범죄경력 조회·회보 불가 회신”(2020. 8. 10. 시행)].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범죄 수사 또는 재판, 형의 집행, 공무원 및 군인의 임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개정안은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유사입법례로, 「공인회계사법」⁵⁾, 「관세사법」⁶⁾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두고있음.

5)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관세사법」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일부개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마련(정태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 사무직원(제12조의5) ○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u><신설></u> ○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 ○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 <u>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음</u> * 결격사유: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과 같음)

*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1)

□ 개정안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세무사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⁷⁾에 따르면 세무사는 세무사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에게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이들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의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을 내세운 선전 금지 의무 규정 등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위반 시 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위법행위가 납세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클 수 있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것임.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법행위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둬으로써 세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의

7)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 업무)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무직원의 위법행위로 납세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둔 입법례로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음.

[전문자격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입법례]

변호사법	법무사법	감정평가법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변호사법	법무사법	감정평가법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세무사와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전문직역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와 균형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세무사의 결격사유와 개정안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비교]

세무사의 결격사유	개정안의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u> ·<u>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세무사의 결격사유	개정안의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기본법」 8)은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제시하고 있음.

결격사유는 입법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되, 결격사유 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민의 직업선택의

8)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형량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둘째,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세무직원을 채용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 외에는 과태료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셋째, 개정안은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사무직원 중 신설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정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세무사 보수기준 마련(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세무사 보수 기준 마련(제15조의2) ○ 세무사는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음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하여 제1항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정함 ○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1)

☐ 개정안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세무사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납세자 등이 이를 준수토록 하려는 것임.

☐ 舊, 「세무사법」⁹⁾(1,999년 개정 이전)에는 세무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음.

이는 종래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의 경우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경쟁제한성이 크고 국제적 기준에 정합하지 않는 사유로 일괄 폐지¹⁰⁾

9) 「세무사법」 [법률 제4983호]

제15조 (계정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①세무사는 계정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4조 (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양수금지 및 보수”를 “양수금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한 데 따른 것임.

현재는 법무사¹¹⁾, 공인중개사¹²⁾, 감정평가사¹³⁾ 등 일부 직역의 근거법률에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¹⁴⁾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¹⁵⁾ 사업자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11) 「법무사법」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12)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하 생략)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무사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일부 세무사의 과다수임으로 세무대리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세무사회원 숫자는 2010년 8,790명 수준에서 2024년 9월 기준 16,50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과당경쟁과 덤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세무대리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면 적절한 가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¹⁶⁾.

□ 다만, 세무업무의 보수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대리를 맡길 수 있었던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세무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납세자에게 같은 가격이라면 가급적 대형 세무법인이나 이름있는 세무사에게 수임을 맡기도록 의사결정을 유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개인 세무사, 신생 세무사가 수임을 받기 어려운 시장환경이 조성될 부작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6) 한국세무사회 의견임

4. 세무법인의 인적요건 완화(정태호의원안, 임광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 사원 및 이사 등(제16조의5) ○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함 ○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음 - 사원이 아닌 사람,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외국세무자문사 ○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함 <신설>	☐ 분사무소를 두지 않는 세무법인의 등록요건 완화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함 - 다만,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함(제3항 단서)
☐ 사무소(제16조의10) ○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신설>	☐ 분사무소 제한 ○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다만, 제16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음

*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1), 임광현의원안 2024. 10. 29. 발의(의안번호 4996)

☐ 2건의 개정안은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임광현의원안은 3명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태호의원안은 3명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되, 이 경우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¹⁷⁾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은 이사인 세무사 3명과 사원인
세무사 2명 이상이 있어야 함.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의 설치
가 가능함.

세무법인은 다수 세무사 구성원간 협업과 조직화를 통해 개인 세
무사에 비해 보다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계
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또한 일반적으로 세무사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무소보다
는 조직화된 세무법인을 보다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런데, 세무법인이 구성원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다수의 분사무
소를 운영하여, 구성원간 협업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무법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¹⁸⁾이
있음.

17) 「세무사법」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
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
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
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18) 한국세무사회 의견임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총 사무소의 수가 이사 수와 같은 세무법인의 수가 전체 세무법인 783개소 중 361개소(46.1%)에 이르고 있고, 사무소 대비 세무사 구성원 비율은 평균 1.36명에 불과함.

- 개정안에 따라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세무법인이 설립된다면,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태호의원안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의 제한으로 협업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무법인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제16조의10에서는 “제16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존 세무법인과 다른 유형의 ‘세무법인’으로 해석하는 경우 완화된 인적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세무법인을 폐쇄하고 다시 설립하여야 하는 절차적 번잡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법문 표현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음.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는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u>	③ <u>분사무소를 두려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u>
제16조의10(사무소) ① <u>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u>	제16조의10(사무소) ① <u>제16조의5제3항의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u>

5. 징계 종류 세분화 및 세무사 징계 권한의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정태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 징계(제17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의 징계를 명할 수 있음 - 등록취소 -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신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견책(譴責)	☐ 징계 종류에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 추가 ○ (현행과 같음) - 등록취소 -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견책(譴責)
☐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제20조의3) ○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에 위임 ○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 목적 법인에 위탁 ○ 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 <신설>	☐ 징계 업무의 한국세무사회 위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한국세무사회 회원에 대한 징계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1)

☐ 개정안은 세무사 징계종류에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를 추가하고, 세무사회에 가입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¹⁹⁾에 따른 세무사 징계제도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거나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징계를 하고 있음. 징계의 종류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 4종류임.

□ 먼저, 징계의 종류로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다 세분화된 징계체계를 통해 위법행위 수준에 비례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세무사가 직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존 고객들의 신고·납부 등 세무 대리 업무의 차질과, 이로 인한 고객 유출로 폐업에 이를 수 있는데, 전체 직무정지가 필요할 만큼의 법 위반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세무사에 대하여는 개정안에 따라 일부의 직무에 대하여만 정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임.

유사 입법례로 「공인회계사법」²⁰⁾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가 직무정지와 별도로 규정되어

19)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20)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일부 직무정지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의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해석이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법문이 ‘전체 직무정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신설되는 ‘일부 직무정지’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상 조문은 아래와 같음.

「세무사법」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7조(제1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 다음,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1만 6천명이 넘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 발생시 징계위원회 개최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의 행정력을 보완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실효적 관리 감독을 통해 세무사 스스로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최근 5년간 총 172건의 세무사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세무사회의 징계요구로 행하여진 횟수는 6회인 반면, 국세청의 징계요구 횟수는 166회로 대부분 국세청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회에 징계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징계권 행사를 통하여 세무대리 업무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세무사 징계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세무사 징계요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국 세 청	166	21	49	9	31	25	31
세무사회	6	-	-	2	1	2	1
계	172	21	49	11	32	27	32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세무사회에 가입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각각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됨으로써 징계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워 징계양정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세무의 날 신설(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세무의 날(제20조의4) ○ 성실납세의 기초가 되는 세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함 ○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1)

☐ 개정안은 성실납세의 기초가 되는 세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무의 날”(매년 9월 9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9월 9일은 세무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날²¹⁾로서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이날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2023.9)한 바 있음.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수입 확보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 등 세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세무공무원, 세무사, 기업의 세무직원, 조세학계 등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긍정적임.

(사)한국세무학회에서도 세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세무 활동의 장려, 세무 종사 연구자와 실무가의 지원 등을 위해 ‘세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1) 「세무사법」이 제정된 날임. [법률 제712호, 1961. 9. 9., 제정]

유사한 사례로,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2018년부터 자체 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2020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²²⁾의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음.

□ 다만, ‘세무의 날’은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하는 ‘납세자의 날’과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이하 생략)				

현재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는 성실납세자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 세무사에 대한 표창²³⁾과 기념행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가 납세자와 세무사로 나누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기념일 취지도 일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보임.

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2024년 127명의 세무사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짐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²⁴⁾에 따르면,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